

대법원 2015. 3. 12 선고 2014다8396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5. 3. 12 선고 2014다83968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14. 11. 11 선고 2013나11532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13. 10. 4 선고 2012가소96089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1. A

2. B

피고, 피상고인C

판결 선고2015. 3. 12.

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4. 11. 11. 선고 2013나11532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이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

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이상훈

대법관김창석

주심대법관조희대